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139호

○ 발 의 자 : 이혜경 의원(찬성자 14명)

○ 발의일자 : 2016년 4월 19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20일

2. 제안이유

○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 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한복 산업 육성 및 한복착용 활성화 행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온 우리 고유의 의복으로 뛰어난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복은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으 며, 창조적 계승을 통해 신한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적 자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특별한 의례에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답지만 입고 활동하기 불편한 옷으로 여겨져일상 속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

한복의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 패션과 접목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에 대한 수요의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및 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동 조례안은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 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춰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하나로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런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한복의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
제5조	한복착용 권장	- 시장은 관내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민간 기업 등 한복착용 권장
제6조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 설날, 추석 및 국경일 등 착용 권장
제7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문화·유적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
제8조	육성 및 지원	- 시장의 한복착용,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육성 -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제9조	표창	- 한복착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한복"에 대한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량한복의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상충을 피하며 상 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 안 제5조는 시장이 관내의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설날, 축석 등과 같은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한복착용을 권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장이 1년 중 한복을 착용 후 참석하는 행사에는 3·1절 타종행사, 광복절 타종행사,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사에 시장만이 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도 함께 착용하여 차츰 한복을 착용하는 행사를 늘려나가는 등 서울시 주요행사부터 참석하는 관계자들의 한복 착용 횟수를 늘려나간다면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제7조(한복착용자의 우대)

-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 및 국악당 운영'사업의 경우, 2015년 에는 백중달빛잔치(2015.8.28.)를 운영하여 총 4,344명의 방문인

원 중 500명의 인원이 한복을 착용하여 입장료 전액인 1만원을 감면받았음.

이에 시민들의 건의로 2016년부터는 한복할인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되어 2016년 '오대감 설 잔치(2016.2.7.~2.9)' 운영시에는 21,440명의 방문객중 510명이 체험비 10%를 감면받았고, '한옥카페 아리'는 2016년 2월 8일부터 운영되어 현재까지 8,793명의 방문객중 108명이 음료 구매시 20%를 할인받는 등 한복할인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남산골한옥마을 및 국악당 한복할인제도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방문인원	감면(체크)	비고
W E S		시티기선	OEDE	인원	(감면율)
	백중달빛잔치	'15.08.28	4,344	500	무료입장
		13.00.20	7,077	300	(기본 : 1만원)
남산골한옥마	오대감 설 잔치	'16.2.7.~ 2.9	21,440	510	체험비 10%
을 및 국악당	- TUIO 글 전시	10.2.7. 2.9	21,440	310	(기본 : 5천원/7천원)
운영	한옥카페 아리	'16.2.8.~ 현재	8,793	108	음료 20%
	국악당	'16 4 7 형제	718	2	티켓 30%
	기획공연	'16.4.7.~ 현재	7 10	۷	(기본 : 2만원/5만원)

제정안은 한복 착용을 권장하기 위한 유인정책으로 입장료 등 감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국립박물관·미술관전시품 관람규칙1)」과 「문화재보호법2)」에 의해,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해당되는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는 이

^{1) 「}국립박물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에 대상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시 또는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박물관·미술관 자료 기증자 및 가족

^{3.}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기초 수급권자

^{4.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65세 이상인 자

제6조(무료관람)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제48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③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미 2013년 10월부터 한복착용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당초 신정·설날 및 추석연휴에만 해당되었던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을 '상 시'로 확대(단, 창덕궁 후원·경복궁 야간개방 등 특별 개방은 유료 로 운영) 하고자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3)」을 개정하여 4대궁·종묘 관리소에 한복을 착용하고 입장하는 자에게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 는 등 이미 다각적으로 무료화 정책을 추진중이므로 추가적인 혜택 을 적용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됨.

○ 제8조(육성 및 지원)

- 안 제8조는 시장이 한복착용 장려를 위해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한복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본부의 '남산골한옥마을'사업에서 한옥입기, 한복스냅사진, 전통예절학교, 한복입고 즐기는 밤문화열전 등 2014년부터 예산이지원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광화문광장관리 운영 사업에서는 2012년부터 궁중복식체험, 역사문화해설 프로그램운영비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3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3)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관람요금 감면) ①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은 별표1의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따라 관람요금을 감면한다(참고자료 2).

〈서울시 한복과 관련 된 사업 및 예산 현황〉

○ 남산골한옥마을(최초사업시기~2016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총계			55,063	130,944	79,560	
1		한복입기	30,063	49,399	15,860	
2	남산골한옥마을 및 국악당 운영	한복스냅사진	_	8,200	25,450	
3		전통예절학교	25,000	30,748	38,250	
4		한복입고 즐기는 밤문화열전 <백중달빛잔치>	_	42,597	-	2016년 사업 미정

○ 광화문광장 관리 (최초사업시기~2016년)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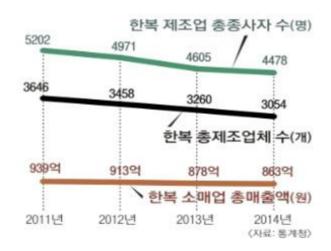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명	사업비	18,960	18,960	15,000	31,320	31,320
광화문광장관리 운 영 (궁중복식체험 프로그램 용역)	비고	- 나도임금이다 (궁중복식체험), - 전기수(역사문화 해설) 프로그램 운영	좌동	좌동	궁중복식체험, 역사문화해설 프로그램운영비	좌동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부설기 관으로 2014년 6월 17일 개관한 '한복진흥센터'가 한복을 우리 대표 문화상징으로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한복을 '입어야 하는 우리 옷', '입고 싶은 우리 옷', '세계가 입는 옷'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한복 나눔 행복 나눔,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한복 민간단체의 우수사업 지원, 한복의 날 행사, 지역 한복축제, 신(新)한복 개발 프로젝트 등 한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한복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복진흥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전국에 4,562개였던 한복 제조업체는 2014년 3,054개로, 33.1%가 줄었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6,476명에서 4,478명으로 30.9% 줄었으며,

한복 소매업체의 매출은 2006년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9년 98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는 2014년 863억원으로 121억원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음.



최근에는 SNS에 올릴 사진촬영용에 머물던 한복 입기가 한복의 세계화, 대중화 등과 맞물리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시발점은 2013년 10월부터 한복을 입으면 서울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면서였고 외국인들 사이에는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민속놀이를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복 열풍이 정작 한복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한복을 코스프레 정도로 여기는 정도여서 대여점만 호황일 것으로 보여짐.

〈타 시·도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12.24
2	전라북도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9.04.24
3	경기도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2012.11.06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2015.05.20
5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2015.10.22

더불어 현재 전국 한복착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은 시·도별은 총 4곳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이며,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서울 은평구가 2015년 10월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에 관한 사업이나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각 시·도별, 지자체에 확인한 바, 담당자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계획이나 방침서가 없고, 조례만 제정되고 한복착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 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부에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어려운 점, 조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는 점, 장기적인 계획이 미

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검토의견

○ 전통문화에 나타나는 고유의 양식과 이미지는 문화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복(韓服)'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서 수위(首位)를 차지할 만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전통문화나 한복에 무관심하고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인 한복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조화시켜 한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마련을 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복과 같은 전통문화산업의 일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 기보다 한복, 한지, 공예, 식품 등 산업화할 수 있는 전통문화 전반 에 관하여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 로 사료됨.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예분야만이 활성화를 위해 공예문화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예문화산업활성화 3개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음.

이에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한 복진흥센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어려운 점, 타 시·도별, 지자체에 조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는 점, 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제정이되어도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서울시 문화·유적 시설 및 공연·전시 이용료 현황

○문화·유적시설

연번	문화 · 유적시설	이용료	ш ¬	
		입장료	관람료	비고
1	운현궁	_	_	무료
2	남산골한옥마을	_	_	무료
3	최규하 가옥	_	_	무료
4	박정희 가옥	_	_	무료
5	서울돈화문국악당	0		유료
6	문학의 집 서울	0		무료
7	남산국악당	0		무
8	남산예술센터	0		유료
9	세종문화회관(공연장)	0		유료
10	세종문화회관(미술관)		0	유료
11	서울시립미술관	_	0	무(유)료 (특별전유료)
12	한성백제박물관	_	_	무료
13	서울역사박물관	_	_	무료

○ 행사·축제

연번	행사·축제명	이용료	ш ¬	
		입장료	관람료	비고
1	서울김장문화제		_	체험프로그램
'	서울삼성군와세 		_	유료(참가비)
2	서울드럼페스티벌	_	_	무 료
3	서울문화의밤	_	_	무 료
4	국악주간	_	_	무 료
5	서울사진축제	_	_	무 료
6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_	_	무 료
7	서울거리예술축제	_	_	무 료
8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_	_	무 료
9	남산봉수대	_	_	무 료
10	제야의 종 타종행사	_	_	무 료
11	서울북페스티벌	_	_	무 료

참고자료 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별표1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1조 관련)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12 "0 "	(일반 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	
국빈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100분의 100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100분의 100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100분의 10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0분의 100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한복을 착용한 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자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 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00분의 100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00분의 100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00분의 10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100분의 100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100분의 50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100분의 100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100분의 100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	

※ 비고

1.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창덕궁 후원 적용